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숭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68

발의연월일: 2020. 8. 24.

발 의 자:김승남・이상직・인재근

이용빈 • 민형배 • 위성곤

오영훈 · 최종유 · 송옥주

윤재갑・소병훈・송재호

이개호・민홍철・이수진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약 2만3천명의 종사자와 3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음.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발생의 빈발이 예상되고, 경마·말산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마사회의 경마중단 장기화로 인해 불법경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른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조 세 포탈, 조직범죄 자금원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해 온 라인 발매를 도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마·말산업 피해를 최 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6조).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표(票)"를 "표(票)(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마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마사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를 시행하는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권발매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발매의 일시 중단, 총 매출 증가분 상당의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6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	
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	
라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	
표방법・마번(馬番) 및 금액 등	<u>표(票)(전자적 형태를 포함</u>
이 적힌 <u>표(票)</u> 를 말한다.	<u>한다)</u>
7. ~ 9.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u>경마</u>	<u>마권</u>
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마사회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
	<u>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u>
	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
	를 시행하는 해당 경마장에서

<신 설>

마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 권발매 시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의 일시 중단, 총매출 증가 분 상당의 장외발매소 규모 조 정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략)